

직권조치결과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10월 18일

남가좌제2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유 *하	유 *하 1959-05-11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4길 (남가좌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10-11
유 *하	유 * 1961-04-25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4길 (남가좌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10-11
윤 *영	윤 *영 1985-02-01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(남가좌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10-11